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06
----------	------

2016년 12월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9월 5일, 이숙자 의원
- 나. 회부일자 : 2016년 9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27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이숙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위원회의 기본 운영원칙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조례 이전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를 각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우 위촉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됨.

따라서 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촉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를 규정하고, 동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위촉위원에 의한 이해충돌을 방지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제9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선희)

가. 개요

- 동 조례안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 관련(안 제9조)

- 현행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제1항제4호에서 반드시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안 제9조제1항~제3항).

다만, 내용 중 “심의”와 “자문”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이를 “심의·자문”으로 일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현행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안 제9조제4항).

다만, 위원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을 것임.

2) 위원의 결격 사유 관련(안 제9조제5항제1호~제4호)

- 안 제9조제5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위원의 결격 사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안 제9조제5항제1호~제4호>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위원의 결격 사유 중 재정지원 관련(안 제9조제5항제5호)

- 현행 녹색서울시민위원회¹⁾는 환경 거버넌스로서 맑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지구환경보전에 기여를 위한 자문·시민실천·조사·모델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소요 경비를 동 조례 제23조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 안 제9조제5항제5호는 “동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경우 위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 조항에 따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경비지급을 받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고 위원이나 위원 소속단체에 경비지급이 불가하다면 위원회 구성 및 실천활동 등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이 소속 단체는 공모사업 지원이 불가하여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한편, 동 조례안에서 안 제9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신설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 집행에 대한 견제·조치시스템이 마련된 점을 고려한다면 안 제9조제5항제5호에 관계없이 위원회 구성원의 이해충돌을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됨.

<안 제9조제1항~제3항>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따라서 안 제9조제5항제5호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규정에 의해 구성원의 이해충돌을 일정 부분 예방할 수도 있는 만큼, 조례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 조항을 수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1) 해당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기획조정위원회 등 3차례 회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추진사업을 결정하고 일반 위원회와는 달리 맑고 쾌적한 환경 서울 조성을 위해 자문뿐 아니라 의제21 시민실천사업·조사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

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내용 중 “자문”과 “심의”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심의·자문”으로 통일하고, 위원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하며, 위원의 결격사유 중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06
----------	------------

제안년월일 : 2016년 12월 19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의 내용 중 “자문”과 “심의”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심의·자문”으로 통일하고, 위원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하며, 위원의 결격사유 중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에게 관한 사항을 삭제함.

2. 주요 골자

- 내용 중 “자문”과 “심의”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심의·자문”으로 통일(안 제9조제1항~제3항)
- 위원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9조제4항)
-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에게 대한 위원 결격사유 규정 삭제(안 제9조제5항 삭제)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자문과”를 “심의·자문 등과”로 하고, “심의회”를 “심의·자문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문과”를 “심의·자문 등과”로 하고, “자문 등에서”를 “심의·자문 등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회”를 “심의·자문 등에”로 한다.

안 제9조제4항 본문 외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남용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안 제9조제5항제5호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u>자문과</u>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u>심의회</u>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u>심의·자문 등과</u>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u>심의·자문 등에</u>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p>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남용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 4. (개정안과 같음)

<삭 제>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심의·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남용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심의·자문 등과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심의·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p> <p>③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남용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p>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